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 사유
○ 서부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
- 성주 서부지역(수륜, 가천, 금수, 대가)의 긴급 구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애로로 서부 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성주소방서의 신축부지 확보요청

○ 성주군통합보훈회관 신축
- 기존 보훈회관이 노후되고 승강기가 없고 계단의 경사도가 심해 고령의 회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
-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하여 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

2. 제안 근거
○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○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3. 주요 골자
○ 서부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
가. 사업개요
- 위 치 : 가천면 창천리 93-1, 94번지
- 기 간 : 2018년 ~ 2020년
- 부지면적 : 2,645㎡(800평 정도)
- 건축면적 : 760㎡(230평 정도) <2층연면적>
- 소요예산 : 24억(토지매입비 등/군비 6억, 건축비/도비18억)
- 설치기준 :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, 대통령령
(관할면적이 20㎢ 이상이거나 인구 1만명 이상 되는 지역)

나. 추진계획

- 2016. 10. : 서부 119 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협조요청(소방서)
- 2016. 10. ~ 2017. 08. : 입지후보지 물색 및 부지소유자 면담 등
- 2017. 10. :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
- 2018. 3. : 2018년 1회추경 반영
- 2018. 4. : 부지취득절차 수행(감정평가, 측량, 매입, 부지정비 등)
- 2020. 11. : 서부 119 안전센터 준공

다. 기대효과

- 화재, 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조기대처로 생명과 재산보호
- 소방서비스 수혜 사각지역 해소 및 재난예방기능 강화

○ 성주군통합보훈회관 신축

가. 사업개요

- 위 치 : 성주읍 경산리 480-1외 4필지

※ 세부내역

지 번	지 적	비 고
계	1,084㎡	
성주읍 경산리 480-1	347㎡	소유 : 성주군
성주읍 경산리 481-1	324㎡	
성주읍 경산리 481-2	218㎡	
성주읍 경산리 481-3	99㎡	
성주읍 경산리 482	96㎡	

- 신축규모 : 지상3층 콘크리트, 연면적 696㎡
- 사업기간 : 2018년 1월 ~ 2019년 12월(2년간)
- 사 업 비 : 1,840백만원(국 500, 도 500, 군840)

· 건축신축비 : 696m2×2,500천원 = 17.4억원

· 장비구입비 : 1억원

※ 층별 사용계획 : 산재되어 있는 보훈 8단체 입주 예정(재향군인회 제외)

층별	활 용 계 획
1 층	상이군경회, 전몰군경유족회, 전몰군경미망인회, 6.25참전자회
2 층	보훈회원 사랑방, 월남참전자회, 광복회, 무공수훈자회
3 층	다목적강당

나. 추진계획

- 2016. 8 : 통합보훈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
- 2017. 3 : 국가보훈처 국비예산 지원요청
- 2018. 1 :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
- 2018. 4 : 공사착공

다. 기대효과

-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
- 보훈단체간 상호 교류증진으로 보훈의식 및 자긍심 고취
- 애국애족 및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

붙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 총괄표 1부.

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2018년도 관리계획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	상반기			하반기			합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	2,645	600,000	 1	 696	 1,840,000	1 1	2,645 696	600,000 1,840,000	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1	2,645	600,000	 1	 696	 1,840,000	1 1	2,645 696	600,000 1,840,000	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2018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1	답	가천면 창천리 93-1, 94	2,645	600,000	2018년 상반기	서부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	
2		성주읍 경산리 480-1외 4필	696	1,840,000	2018년 하반기	건물신축 (성주군통합보훈회관)	

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.
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
2018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

회계명 :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	재산표시				교환대상수량	추정가액	교환시기	교환사유	교환대상자	비고
		구분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량						
건		처분 취득		해		당		없		음	
계	토지	처분 취득									
	건물	처분 취득									
	기타	처분 취득									

주) (1) 구분 :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.

(2) 교환대상수량 :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,000㎡이고, 교환대상토지가 2,000㎡이면 “일단의 수량”란에는 5,000, “교환대상수량” 란에는 2,000을 기재한다.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.

2018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

회계명 :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대상수량	과표 또는 평가액	매각시기	매각사유	매 수 희망자 성 명	비고
	지목	소 재 지	일단의 수 량						
		해		당		없		음	
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

주) (1)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: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○○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.

(2) 일단의 수량 : 일단의 토지(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)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.

(3) 매각대상수량 :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.

(4) 과표 또는 평가액 : (3)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.

(5) 매각시기 :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.

(6) 매각사유 :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2018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

회계명 :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양여대상수량	과표 또는 평가액	양여시기	양여사유 및 근거법령	양수자	비고
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량						
		해		당		없		음	
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

주) (1) 양여대상수량 : “양식 7-3”의 주) (2)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.

(2) 양여사유 :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.